

오사카부 자전거 조례 규정집



자전거는 차량입니다

자전거는 일상생활에서 등하교나 출퇴근, 사이클링 등에 이용되는 편리하고 생활에 밀접한 교통수단으로 유아부터 고령자까지 폭넓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자의 매너 위반 등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사고로 인한 거액의 배상 청구 사례도 발생하는 등, 자전거는 올바르게 이용하지 않으면 사고를 일으키는 위험한 교통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사카부에서는 자전거의 안전하고 적정한 이용을 촉진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동시에 사고를 당했을 때의 대비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오사카부 자전거의 안전하고 적정한 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오사카부 자전거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제11호

자전거는 도로 교통법상 ‘경차량’이라고 하며,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동일한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자전거 사고에 대한 대비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자전거 이용자(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보호자)는 오사카부 자전거 조례에 따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의무화)

사업자는 업무 중 자전거 사고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전거 보험 가입에 노력합시다. (자전거 보험에 관한 규정은 2016년 7월 1일 시행)

●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 보험이란?

개인 배상 책임 보험과 같이 자전거 사고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상하는 상해보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사례

자전거 사고의 피해로 인해 수천 만 엔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배상 책임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배상액	사고의 개요
9,521만 엔	남자 초등학생이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에 보행 중인 여성과 정면 충돌. 여성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감독 책임이 있는 어머니에게 배상 명령. (고베지방재판소 2013년 7월 4일 판결)
9,266만 엔	남자 고등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대각선으로 횡단하다가 맞은편 차선으로 자전거를 타고 직진해 온 남성 회사원과 충돌. 남성 회사원은 언어 기능 상실 등의 장애가 남았다. (도쿄지방재판소 2008년 6월 5일 판결)
3,970만 엔	남자 중학생의 자전거가 등화를 켜지 않고 보도를 주행하다가 남성 회사원과 충돌. 남성 회사원은 쓰러지면서 머리를 강타당해 사망. (오사카지방재판소 2007년 7월 10일 판결)

(자전거 손해배상 보험 등의 가입 등)

오사카부 자전거 조례 제1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자전거 이용자(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보호자)는 자전거 손해배상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사업자가 그 사업 활동에서 종업원에게 자전거를 이용하게 할 때는 해당 자전거 이용에 관련된 자전거 손해배상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전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전거 보험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자전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자전거 보험의 종류

자전거 보험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 가입하는 보험으로서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 등에 부대되는 것, 가입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 계약한 것, 공제나 PTA의 보험과 같이 단체로 가입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또, TS 마크 부대 보험은 자전거 자체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그 자전거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누가 운전하더라도 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용으로는 TS 마크 부대 보험 외에 업무 수행에 의해 발생한 대인 사고의 손해를 배상하는 시설 배상 보험이 있습니다.

자전거 보험의 종류		보험의 개요
개인 배상 책임 보험	자전거 대상 보험	자전거 사고에 대비한 보험
	자동차 보험의 특약	자동차 보험의 특약으로 부대된 보험
	화재 보험의 특약	화재 보험의 특약으로 부대된 보험
	상해 보험의 특약	상해 보험의 특약으로 부대된 보험
공제		전국노동자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 오사카시민공제생활협동조합 등
단체 보험	회사 등의 단체 보험	단체 구성원 대상 보험
	PTA의 보험	PTA나 학교가 창구가 되어 가입하는 보험
TS 마크 부대 보험		자전거 자체에 부대된 보험
신용카드 부대 보험		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부대된 보험

‘오사카부 자전거 조례’ 관련 홈페이지

<http://www.pref.osaka.lg.jp/dorokankyo/osakajitensha/index.html>

(오사카부 자전거 조례 및 자전거 보험의 리플릿, 자전거 보험 가입 확인 체크 시트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로만 대응



어린이나 종업원이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합시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매너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린이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계속적으로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는 종업원에 대해 교통 안전에 관한 연수 등을 실시합시다.

● 교통 안전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 어린이는 보호자를 보고 크기 때문에, 먼저 보호자 자신이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매너를 향상 시킵시다.
- 교통 안전에 대해 평소부터 어린이와 이야기를 나눕시다.

● 초등학생~고등학생에 대한 교통 안전 교육

- 초등학생이 되면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행동 범위가 넓어지고, 보호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행동하는 기회도 증가합니다.
-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자전거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로 가해자가 되는 일도 많아집니다.
-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기능과 지식의 습득 외에 도로나 교통 상황에 맞게 위험을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합시다.

● 종업원에 대한 교통 안전 교육

- 종업원에 대해 연수 등을 실시하여 보행자에 대한 배려, 반사 기재의 효과, 자전거 보험의 필요성 등을 재확인합시다.
- 교통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여서 자전거 사고를 방지합시다.

(학교장에 의한 교통 안전 교육 등)

오사카부 자전거 조례 제8조 제1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장은 아동 및 학생에 대해 안전 적정 이용에 관한 필요한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호자 등에 의한 교통 안전 교육 등)

오사카부 자전거 조례 제9조 제1항, 제2항

보호자는 안전 적정 이용에 관한 강습을 수강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그 감호하는 미성년자에 대해 안전 적정 이용에 관한 필요한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업자는 그 종업원에 대해 안전 적정 이용에 관한 필요한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사카부 경찰본부 교통 안전 테스트’ 홈페이지

http://www.police.pref.osaka.jp/03kotsu/kotsu_anzen/test/test.html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1회 교통 안전에 관한 문제, 정답, 해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학교 등의 교통 안전 교육에 활용하십시오.) ※일본어로만 대응



생명을 보호하는 헬멧을 착용합시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몸에 대한 머리 크기가 커서 쓰러졌을 때 머리를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고령자는 자전거 사고로 인해 머리 부분이 손상되어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에서는 13세 미만의 어린이, 오사카부 자전거 조례에서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 헬멧 착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의 11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운전할 때나 유아를 유아용 좌석에 태울 때는 어린이에게 승차용 헬멧을 씌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승차용 헬멧 등의 착용)

오사카부 자전거 조례 제11조 제2항

고령자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승차용 헬멧 등을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아 2인 동승용 자전거



밤에는 전조등을 켁시다

야간이나 교차로에서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시인성을 향상시켜 사고를 방지하도록 자전거에 전조등과 측면의 반사 기재를 장착합시다.

차량등의 등화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

오사카부 도로교통규칙 제10조 제1호

벌칙: 5만 엔 이하의 벌금

야간(일몰부터 일출까지의 사이)에 통행하는 경우에는

전조등을 켜야 한다. ※전조등~백색 또는 담황색으로 야간에 전방 10미터 앞에 있는 물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이나
자동차나 모두 나의 존재를
알 수 있겠지!



(반사 기재의 장착)

오사카부 자전거 조례 제11조 제1항

자전거 이용자, 자전거 대여 업자 및 기타 자전거를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사람이 야간에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전거의 측면에 반사 기재를 장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브레이크가 잘 듣는 자전거를 탑시다

자전거의 제동장치 등

도로교통법 제63조의 9 제1항

벌칙: 5만 엔 이하의 벌금 자전거 운전자는 기준에 적합한 제동장치를 갖추지 않아 교통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 제63조의 10

벌칙: 5만 엔 이하의 벌금

경찰관은 기준에 적합한 제동장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전거를 정지시켜서 검사할 수 있으며, 응급 조치나 운전 중지를 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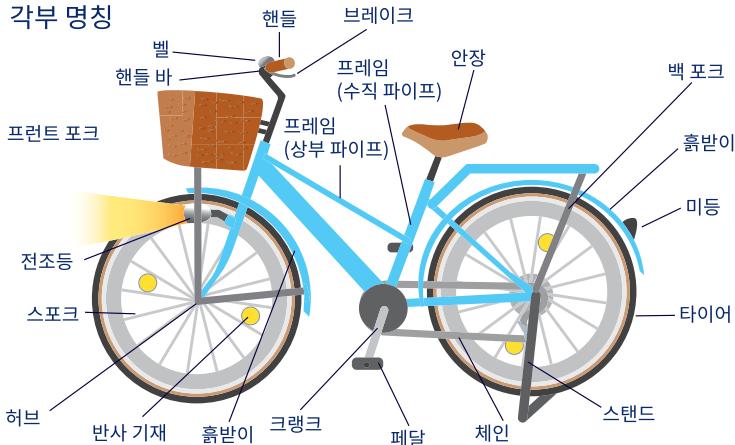
자전거도 점검 정비가 필요합니다

자전거는 차량입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자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 정비를 실시합시다.

타이어의 공기압이나 브레이크의 작동 상태와 같은 일상적인 자기 점검과 자전거 판매점 등에서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를 받으십시오.

● 자전거의 각부 명칭



(자전거의 점검 및 정비)

오사카부 자전거 조례 제10조 제1항, 제2항

자전거 이용자(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보호자), 자전거 대여 업자 및 기타 자전거를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사람은 이용하거나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자전거에 대해 안전 적정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점검 및 정비를 적절하게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악질적인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강습

아래 14개 항목의 ‘위험 행위’로 인해 3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된 위반자는 강습의 대상이 됩니다.(개정 도로교통법, 2015년 6월 1일 시행)

● 14개 항목의 ‘위험 행위’

- | | |
|-------------------------|---------------------------|
| ✓ 신호 무시 | ✓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차량 우선 방해 등 |
| ✓ 통행 금지 위반 | ✓ 회전 교차로에서의 안전 진행 의무 위반 등 |
| ✓ 보행자용 도로에서의 서행 위반 등 | ✓ 일시 정지 위반 |
| ✓ 통행 구분 위반 | ✓ 보도에서의 보행자 방해 |
| ✓ 노측대의 보행자 방해 | ✓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 운전 |
| ✓ 차단기가 내려진 건널목에의 진입 | ✓ 음주 운전 |
| ✓ 교차로에서의 우선 도로 통행자 방해 등 | ✓ 안전 운전 의무 위반 |



정해진 곳을 통행하지 않으면 교통 위반이 됩니다

통행 구분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벌칙: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엔 이하의 벌금

자전거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는
차도의 왼쪽!



좌측 통행 등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자전거는 도로의 좌측으로 붙어서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 차량 통행로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맨 왼쪽의 차량 통행로를 통행합시다.

경차량의 노측대 통행

도로교통법 제17조의 2 제1항

자전거는 현저하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의 좌측 부분에 설치된 노측대를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의 2 제2항

벌칙: 2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노측대를 통행할 때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림과 같은 보행자용 노측대는
자전거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밀며 걷거나,
차도의 노측대 쪽으로 붙어서 통행합시다.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켜야 할 교통 법규가 있습니다

보통 자전거의 보도 통행

도로교통법 제63조의 4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6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 자전거 보도 통행 가능 표지판 등이 있는 경우.
- 자전거를 운전 중인 사람이
 - 13세 미만의 어린이
 - 70세 이상의 고령자
 - 신체 장애인
 인 경우
- 도로 공사 중일 때나 주차 차량이나 교통량이 많은 등 차도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63조의 4 제2항

벌칙: 2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보도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부분을 통행해야 한다.
- 보도를 통행하는 경우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할 것.
-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게 될 때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 자전거 통행 지정 부분이 있을 때는 지정 부분을 통행 해야 한다.





교차로 횡단이나 통행 방법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자전거의 횡단 방법, 교차로에서의 자전거 통행 방법

도로교통법 제63조의 6, 제63조의 7

교차로나 그 근처에 자전거 횡단로가 있으면 그 자전거 횡단로를 통행해야 한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장소이며, 횡단 중인 보행자가 없는 등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전거를 탄 채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

신호기의 신호 등에 따를 의무

도로교통법 제7조

벌칙: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엔 이하의 벌금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7조, 제4조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벌칙: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엔 이하의 벌금
사람 모양의 기호가 있는 신호기에 “步行者·自転車専用(‘보행자·자전거 전용’)이라는 의미입니다.”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신호기에 따라야 한다.



지정 장소에서의 일시 정지

도로교통법 제43조

벌칙: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엔 이하의 벌금

일시 정지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교차로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자전거는 1인용 교통수단입니다

승차의 제한

도로교통법 제57조 제2항
오사카부 도로교통규칙 제11조
벌칙: 2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이를 자전거의 승차 인원은 1명을, 삼륜 자전거의 승차 인원은 승차 장치에 맞는 인원을 초과하지 말 것. 단, 16세 이상의 운전자가

- 6세 미만의 유아 1명을 유아용 좌석에 승차시키는 경우
- 6세 미만의 유아 2명을 유아 2인 동승용 자전거의 유아용 좌석에 승차시키는 경우
- 4세 미만의 사람 1명을 끈 등으로 확실하게 업는 경우
(유아 2인 동승용 자전거에 유아 2명을 동승시킨 경우는 제외)

또는

- 운전자 이외의 사람 1명을 2인승 자전거에 태우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유아 2인 동승용 자전거에 승차할 때는 안전 잠금을 해제하는 등 그 사용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합니다.

유아 2인 동승용 자전거는 일본의 안전 기준인 SG 마크나 BAA 마크 등이 있는 안전한 자전거를 이용합시다.



다른 행위와의 동시 운전은 하지 맙시다

다음과 같은 행위와 동시에 운전을 하면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안정을 잃을 우려가 있는 등 대단히 위험하므로 절대로 하지 맙시다!

도로교통법 제71조 제6호
오사카부 도로교통규칙 제13조
벌칙: 5만 엔 이하의 벌금

- 우산을 쓰거나, 물건을 짚어지거나, 또는 물건을 드는 등 시야를 방해하거나 혹은 안정을 잃을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지 말 것.
- 후대전화를 들고 통화를 하거나 메일을 하면서 자전거를 운전하지 말 것.
- 헤드폰 스테레오 등을 이용하여 대음량(경음기, 긴급 자동차의 사이렌, 경찰관의 지시 등 안전 운전에 필요한 교통에 관한 소리 또는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음량)으로 음악 등을 들으면서 자전거를 운전하지 말 것.

※음향에 관계없이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성이 있습니다.



오사카부 자전거의 안전하고 적정한 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

(목적)

제1조 이 조례는 오사카부 및 자전거(도로교통법(1960년 법률 제105호) 제2조 제1항 제11호의 2에 규정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이하 동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자전거 이용자'라고 한다.)의 책무와 사업자, 교통 안전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체(이하 '교통 안전 단체'라고 한다.)와 부민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이러한 사람이 협동하여 자전거와 관련된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 또 자전거의 적정 이용(이하 '안전 적정 이용'이라고 한다.)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에 관련된 교통사고의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사카부의 책무)

제2조 오사카부는 안전 적정 이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오사카부는 전향의 시책을 실시할 때 사업자, 교통 안전 단체, 부민, 국가 및 시정촌과 연계 및 협력해야 한다.

3 오사카부는 관계 기관과 연계 및 협력을 하여 안전 적정 이용을 위한 자전거에 관련된 도로 교통 환경의 정비에 노력해야 한다.

4 오사카부는 사업자, 교통 안전 단체 및 부민의 안전 적정 이용에 관한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자전거 이용자의 책무)

제3조 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가 교통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동일.)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동 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말한다. 이하 동일.)가 함께 도로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안전 적정 이용에 노력해야 한다.

(사업자의 역할)

제4조 사업자는 안전 적정 이용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그 사업 활동을 통한 안전 적정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사업자는 안전 적정 이용 촉진에 관한 오사카부의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통 안전 단체의 역할)

제5조 교통 안전 단체는 안전 적정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통 안전 단체는 안전 적정 이용 촉진에 관한 오사카부의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민의 역할)

제6조 부민은 안전 적정 이용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가정 및 지역에서 안전 적정 이용에 관한 대응을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부민은 안전 적정 이용 촉진에 관한 오사카부의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전거 소매업자 등의 정보 제공)

제7조 자전거 소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하 '자전거 소매업자'라고 한다.) 또는 자전거 대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하 '자전거 대여 업자'라고 한다.)은 자전거를 판매하거나 대여할 때는 자전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자전거 구입자'라고 한다.)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승차용 헬멧을 쓰도록 하고 기타 안전 적정 이용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장에 의한 교통 안전 교육 등)

제8조 학교교육법(1947년 법률 제26호)에 규정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특별지원학교, 고등전문학교 및 고등 과정을 둔 전수학교(이하 '학교'라고 한다.)의 장은 아동 및 학생에 대해 안전 적정 이용에 관한 필요한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오사카부는 부립 학교 이외의 학교를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 전향에 규정하는 교통 안전 교육에 대해 조언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호자 등에 의한 교통 안전 교육 등)

제9조 보호자(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미성년 후견인 및 기타 사람으로 미성년자를 실제로 감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동일.)는 안전 적정 이용에 관한 강습을 수강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그 감호하는 미성년자에 대해 안전 적정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사업자는 그 종업원에 대해 안전 적정 이용에 관한 필요한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전거의 점검 및 정비)

제10조 자전거 이용자(미성년자는 제외. 제12조 제1항에서 동일.) 및 자전거 대여 업자 및 기타 자전거를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사람은 이용하거나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자전거에 대해 안전 적정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점검 및 정비를 적절하게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보호자는 그 감호하는 미성년자가 이용하는 자전거에 대해 안전 적정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점검 및 정비를 적절하게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반사 기재의 장착 및 승차용 헬멧 등의 착용)

제11조 자전거 이용자, 자전거 대여 업자 및 기타 자전거를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사람이 야간에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전거의 측면에 반사 기재를 장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고령자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승차용 헬멧 및 기타 자전거 이용에 관련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기구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전거 손해배상 보험 등의 가입 등)

제12조 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 손해배상 보험 등(자전거 이용에 관련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피해에 관련한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이하 동일.)에 가입해야 한다. 단, 해당 자전거 이용자 이외의 사람에 의해 해당 자전거 이용에 관련된 자전거 손해배상 보험 등에 가입했을 때는 예외로 한다.

2 보호자는 그 감호하는 미성년자가 자전거를 이용할 때는 해당 자전거 이용에 관련된 자전거 손해배상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단, 해당 보호자 이외의 사람에 의해 해당 자전거 이용에 관련된 자전거 손해배상 보험 등에 가입했을 때는 예외로 한다.

3 사업자가 그 사업 활동에서 종업원에게 자전거를 이용하게 할 때는 해당 자전거 이용에 관련된 자전거 손해배상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오사카부 및 교통 안전 단체는 자전거 손해배상 보험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편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상호 연계 및 협력 아래 자전거 손해배상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전거 손해배상 보험 등의 가입 확인 등)

제13조 자전거 소매업자가 자전거를 판매할 때는 해당 자전거 구입자에 대해 자전거 이용에 관련된 자전거 손해배상 보험 등의 가입 유무를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자전거 소매업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통해 자전거 이용에 관련된 자전거 손해배상 보험 등에 가입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해당 자전거 구입자에 대해 자전거 손해배상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자전거 대여 업자는 자전거를 빌리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자전거 손해배상 보험 등에 가입한 자전거를 대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동차 등 운전자의 준수 사항)

제14조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 위험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에 충분히 주의해서 운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오사카부 자전거 조례’ 종합 창구 전화번호 06-6944-6736

(오사카부 도시정비부 교통도로실 도로환경과 내)※일본어로만 대응